KOSHA GUIDE

C - 96 - 2014

- (라) 가설구조물의 구조계산서 등 당초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 의견서 및 그 전문가(전문가가 공단인 경우는 제외)의 자격증 사본
- (마) 그 밖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 설계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(4)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설계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.
 - (가)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)
 - (나)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3조제4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명령한 공사착공중지명령 또는 계획변경명령 등의 내용
 - (다) 같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통지서
 - (라) 설계변경 요청 대상 공사의 도면
 - (마) 당초 설계의 문제점 및 변경요청 이유서
 - (바) 그 밖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 설계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(5)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설계변경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설계변경금액확정요청서를 작성하여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(가) 설계변경사유서(전문가의 검토의견서)
 - (나) 설계변경 전후 상세도
 - (다) 수량산출서
 - (라) 단가산출서(물가자료, 품셈, 일위대가, 실적단가 등 비교표)
 - (마) 설계변경 산출내역서
- (6) 도급인으로부터 승인된 설계변경금액확정서는 공사비의 계약변경 때에 포함하여 변경계약한다.

6.5 설계변경 불승인에 따른 조치

- (1) 도급인은 수급인의 설계변경요청 문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하지 않을 수 있다.
 - (가) 당초 설계서 보다 불안전한 구조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
 - (나) 설계서에 대한 수급인의 안전성 평가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또는 설계서의 가설구조물로도 충분히 안전함을 입증한 경우